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호 2116

제출연월일 : 2024. 7. 22.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설치·운영하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심의·조정 분야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에"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2조(「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의 제목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을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계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로, "국토교통부에"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3조(「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를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제2호 중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건설산업위원회"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건설산업위원회"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건설산업위원회의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을 "조정하고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위촉하는"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업 또는건설용역업"을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금융 분야"로 한다.

1의2.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 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또는 금

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건설분쟁조정분과위원회
-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 · 조정은 위원회의 심의 · 조정으로 본다.
-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80조 중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를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로 한다.

제86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방법"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0조 중 "위원과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4조(「건축기본법」의 개정)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3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를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축위원회"를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5조(「건축법」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중앙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이 법의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5.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을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하기 위하여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례"를 "관련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건축위원회"를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건축위원회"를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4조의2의 제목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축위원회"를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지방건축위원회회의록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중 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위원회"를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건축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위원회"를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4항 중 "건축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로, "건축위원회의"를 "지방건축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위원회의"를 "지방건축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건축위원회의"를 "지방건축위원회의"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지방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7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을 "중앙건축위원회 또는"으로,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77조의6제1항 후단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77조의12제2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77조의13제6항 단서 중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77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위원회" 를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77조의16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건축위원회"를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5항 전단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04조의2 중 "건축위원회 또는"을 "중앙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및"으로 한다.

제10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 제6조(「건축사법」의 개정)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 시30소의4세1성을 다듬과 같이 하고, 같은 소에 세3성을 다듬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 영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에"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8조(「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공토지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로, "국 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비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비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위촉하는"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으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도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시·도분쟁조정위원회 및 시·군· 구분쟁조정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 회가 시·도분쟁조정위원회 및 시·군·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을 대신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군·구분쟁조정위원 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1조제2항제9호 중 "대통령령"을 "시·도"로, "조례(지방분쟁조정위 원회에 한정한다)"를 "조례"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을 "(시·도 및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분쟁조정위원회" 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 군·구를 관할하는 시·도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 협의하 여 정하는 시·도(분쟁이 발생한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로 한정한다)가 심의·조정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분쟁조정위원회"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시·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사"를 "건축사·기술사"로,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장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73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대통령령으로"를 "시·도의 조례로"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제5항) 본문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시·도의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제8항)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본쟁조정위원회"를 "시·도본쟁조정위원회"를 "시·도본쟁조정위원회"를 "시·도본쟁조정위원회"를 "시·도본쟁조정위원회"를 "시·도본장조정위원회"를 "시·도본장조정위원회"를 "시·도본장조정위원회"를 "시·도본장조정위원회"를 "시·도본장조정위원회"를 "시·도본장조정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를 "시·도의조례로정하는"으로 한다.

- ③ 시·도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시·도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도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6조제1항 전단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을 "시·도분쟁조정위원회는"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시·도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을 "시·도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를 각각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8조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을 "(시·도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를 "시·도지사는 시·도분쟁조정위원회의"로, "고시로 정하는"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를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대통령령으로"를 "시·도의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시·군·구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96조제3호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9조제2호 중 "제50조제2항 및 제78조를"을 "제50조제2항(제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제17호 중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0조(「공인중개사법」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중개사의"를 "국토교통부장 관은 공인중개사의"로, "국토교통부에"를 "필요한 경우"로, "둘 수 있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11조(「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의 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과학기술의"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로, "국토교통부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 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12조(「국토기본법」의 개정)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29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3제1항 제1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제39조제1항 중 "기업도시"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도시"로,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위원회를 둔다"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위촉하는"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법률 제2029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제3항제 3호가목 중"「건축법」 제71조제4항"을"「건축법」 제3조의2"로 한 다.

제14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제3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으로, "국토교통부에"를 "필요한 경우"로, "둘 수 있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15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 제16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위촉하는"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건축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제9호 본문 중 "건축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7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부동산서비스산업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에"로, "국토교통부에"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위촉하는"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입지정책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에"로, "국토교통부에"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19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제1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으로, "국토교

통부에"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제20조(「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개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하는"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으로 한다.

제21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지적재조사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또는 위촉"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역·지구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으로, "국토교통부에"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위촉하는"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으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해외건설 촉진법」의 개정)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같은 법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설산업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종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 또는 지명된 사람은 같은 법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산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 또는 지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조정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9조의 개정규정에따른 건설산업위원회에 심의·조정 요청된 것으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건축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건 축정책위원회는 같은 법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종전의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지명 및 위촉된 사람은 같은 법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지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 책위원회에 심의·조정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심의·조정 요청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 정위원회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

는 같은 법 제9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국토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토 정책위원회는 같은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 속으로 설치된 국토정책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종전의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 토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같은 법 제26조의 개정규정 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 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정 책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도시재생특별위원 회는 같은 법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종전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은 같은 법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법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종전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같은 법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 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18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 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33호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②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기고 한다.

③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및 기방건축위원회 기 및 한다.

④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

회"로 한다

⑤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72조제2항"을 "「건축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3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건축위원회가 대신할"을 "지방건축위원회가 대신할"로 한다.

⑦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6호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제36조제1항 본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3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하다.

제36조제2항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건축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두는 건축위원회"를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①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기"로 한다.

②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회"로 한다.

③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 위원회"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2호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건축위원회"를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

회"로 한다.

제1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위원회"를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① 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b)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 ☞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B)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및 기방건축위원회 기 호다.

⑩ 법률 제20293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기고 한다.

②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기고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기고 한다.

②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및 기방건축위원회 기 및 한다.

②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

- 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 9.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제51조제10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제1호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3항제7호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한다.

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건축법」 제72조제2항"을"「건축법」 제4조"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2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기"로 한다.

② 법률 제20235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 ②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제1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 ②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및 기방건축위원회 및 기방건축위원회 및 기방건축위원회 및 기방건축위원회 및 기방건축위원회 기교 한다.

③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3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3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및 기방건축위원회 및 하다.

-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 ③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기고 한다.

❽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회"로 한다.

-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 ③6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건축위원회"를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호 중 "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③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 축위원회"로 한다.

④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④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및 기방건축위원회 기 및 한다.

② 법률 제2027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전단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③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④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1항제34호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⑤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기고 한다.

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④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로 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감정평가관리 · 징계위원	제40조(감정평가관리 · 징계위원
회) ① <u>다음</u> 각 호의 사항을 심	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u>국토</u>	필요
<u>교통부에</u> 감정평가관리·징계	한 경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u>둔다</u> .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u>수 있다.</u>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
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	회의 구성・운영 등) ①국토교
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위하여 <u>국토교통부에</u> 건설기계	필요한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	
절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	<u>구성·운</u>
	<u>영할 수 있다</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조절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조
	절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	
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	
8장( <u>제69조부터 제79조까지</u> , 제	<u>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u>
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부터
다.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
	<u>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u>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	
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 2. 제69조에 따른 <u>건설분쟁 조</u><u>정위원회</u>에 대한 조정신청
- ② (생략)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 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삭 제
- ③ ④ (생 략)
- 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5명</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 1. (현행과 같음)
- 2. ---- 건설산업위원

   회---- ----
- ② (현행과 같음)

제8장 건설산업위원회

세69소(건절산업위원외의 설시)
①
<u>조정하고 제86조의</u>
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③・④ (현행과 같음)
세70조(위원회의 구성) ①
<u>25명</u>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 람이 된다.

1. (생략)

<신 설>

- 2. (생략)
- 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또는 금융 분야-----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 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
- ③ ~ ⑤ (생 략)

<신 설>

- <u>여 위촉하는</u> --.
  - 1. (현행과 같음)
  - 1의2.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 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 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 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전 공한 사람
  - 2. (현행과 같음)
- 3. 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 3. ----- 건설업, 건설용역업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71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건설분쟁조정분과위원회
    -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 표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76조(조정부) ① 위원회는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 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 部)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u>제69조</u> 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 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 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생 략) 명단 공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 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 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 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 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삭 제></u>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u>제69조,</u> <u>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1</u> <u>조의2,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u> <u>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8</u> <u>조의3, 제79조</u> -----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 등)①(현행과 같음)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따라 명단을 공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 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 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 야 한다.
- ④ (생략)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u>위원과 제86조의4</u>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 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방
	법		
	<u>.</u>		
제	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
	제) 위원 -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	
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	
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u>대통령</u>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	국토교통부장관
위원회를 둔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3
<u>대통령</u> 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	국토교통부장관
음 각 호의 <u>자로</u> 한다.	<u>사람으로</u>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1
중앙행정기관의 <u>장</u>	<u>차관 또는 차관</u>
	급 공무원
2.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2
풍부한 <u>자 중에서 대통령이</u>	<u>사람 중에서 국토</u>
위촉한 자	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
	여 위촉하는 사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
력) ①・② (생 략)	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	③

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 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보완을 추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 건축규정과 관련된 관할 시·군 ·구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⑤ (생략)

지방건축위원회
4
지방건축위
<u>원회</u>
⑤ (현행과 같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조의2(중앙건축위원회)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건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이 법의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
	<u>한 사항</u>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u>사항</u>
	5.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
	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 제4조(지방건축위원회) ① 시・도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 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중앙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 어 운영할 수 있다.

-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 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건 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지사 -----항에 대한 심의등을 하기 위하 여 각각 지방건축위원회를 ---

라	한다)	하기	위형	누여	각각	건축
위	원회를	두o	나야	한디	<b>}</b> .	

- 이 법과 <u>조례</u>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 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

   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

   회는 제외한다.
- 4. (생략)
- 5. 다른 법령에서 <u>건축위원회</u>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 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 영할 수 있다.
-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 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에 한정한다)

1	관련된 조례
< <u>식</u> 제>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 4. (현행과 같음)
- 5. ----- <u>지방건축위원</u> 회-----
- ② <u>시·도지사</u> -----

건축위원회-----

-----

----- <u>지방건축위원회---</u>

\_\_\_\_\_

<삭 제>

-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
   축위원회에 한정한다)
- 3. (생략)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u>건축위원</u> 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 다.
-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

3. (현행과 같음)
③
지방건축위원회
(4)
지방건축
<del></del> 위원회
<u>기연기</u>
, ,,,,,,,,,
⑤ <u>지방건축위</u>
<u>원회</u>
<u>해당</u>
· 제4조의2(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u>심의 등)</u> ①
지방건축위원회(이하

- <u>위원회"라 한다)</u>의 심의를 신청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u>건축위원회</u>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 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알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
②
지방건축위원
<u> </u>
③ 지방건축위원
<u> </u>
<u>지방</u>
<u>건축위원회</u>
<b>4</b>
<u>지방건축</u>
위원회

다.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 제4조의3(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 의 공개) -----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 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 지방건죽위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 워회 -----용 •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적용의 완화) ① (생 략) 제5조(적용의 완화)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 지방건축위원회---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u>건축위원회</u>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 ⑨ (생 략)
- 제11조(건축허가) ① ~ ③ (생략)
  -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⑤ ~ ⑨ (생 략)
  -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 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

사전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건축위원회 -
③ ~ ⑨ (현행과 같음)
세11조(건축허가)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u>지방건축위원회</u>
1.・2.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
축위원회

하면 <u>건축위원회 심의</u>의 효력이 ---- <u>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u> 상실된다. 방건축위원회 심의-----

#### ① (생략)

-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① · ② (생 략)
  -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u>건축위</u>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u>건축</u>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u>건축위원회</u> 심의에 안 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 의할 수 있다.
  -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 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 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 ⑤ ~ ⑦ (생 략)
-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② (생 략)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

<u> 8 8 신국 기 전위 그는 기</u>
방건축위원회 심의
<b>.</b>
①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건
축위원회
<u>지방</u>
<u>건축위원회</u>
<u>지방건축위원회</u>
<b>4</b>
지방건축위원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 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 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생략)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저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
건축위원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현행
과 같음)
2
· 
지방건축위원
<u> </u>
<u>.</u>
③・④ (현행과 같음)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이해관계인의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③ (생 략)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지방건축위원회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지방건축위원회
·

2	(생	략)
<u>_</u>	( 0	1/

- ③ 삭 제
-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기술적 기준) ① (생 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 을 하려면 미리 <u>건축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생 략)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기술·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② (현행과 같음)
4
기바거츠이이
<u>지방건축위원</u> <u>회</u>
제68조(기술적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u>중앙건축위원</u>
<u>회</u> ③ (현행과 같음)
<ul><li>4</li></ul>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 등)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 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 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 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 난 · 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 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 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 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 장 · 광역시장 · 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가 두는 건

<u>중앙건축위원</u>
<u> গ্র</u>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중앙건</u>
축위원회의 심의를
지방건축위원회의
5
<u>স</u>

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 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 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⑦ ~ ⑪ (생 략)
-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방건축위원회의
6
지방건축위
원회의
⑦ ~ ① (현행과 같음)
1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वन है। (११४न ६व)
2
②
②
②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 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축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지방건축위원회-----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①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 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 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 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 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 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 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방건축위원회-----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생략)
-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 지례) ① ~ ⑤ (생 략)
  -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 ⑦・⑧ (생 략)
-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 정 등) ① (생 략)
  -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

②
지방건축위원회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
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6
<u>지방건축위원회</u>
⑦·⑧ (현행과 같음)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 정인가권자가 두는 <u>건축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 4. (생략)
- ③ (생략)

· ② (생 략)

-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①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 하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
	- —
	-
지방건축:	위
원회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 —
	-
지방:	<u>건</u>
축위원회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	1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건축:	위 <u>위</u>
원회	
	-
	-
	- —
	-
	-
	-
	- —
<u>지방건축위원회</u>	
	-

거쳐야 한다.

④ (생략)

제78조(감독) ① ~ ④ (생 략)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 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 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 ·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 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감독) ① ~ ④ (현행과 같
<u></u> 이 교
⑤
지방건축위
<u>원회</u>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중앙건축위원회, 지
방건축위원회 및
<u>0亿分月亿分 大</u>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
제)

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 5. (생략)

<b>.</b>
1.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
위원회의 위원
1의2. ~ 5. (현행과 같음)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①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①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3제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1항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하려
<u>에 둔다.</u>	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u>.</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
	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를 해산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지적위원회) ① <u>다음</u> 각	제28조(지적위원회) ① <u>국토교통</u>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	부장관은 다음
하여 <u>국토교통부에</u> 중앙지적위	<u>필요한 경우</u>
원회를 <u>둔다</u> .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
	<u>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지</u>
	적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u>공공토지</u>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국토교통
<u>의</u>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부장관은 공공토지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	필요한 경우
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	
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	<u>구성</u>
	<u>· 운영할 수 있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비축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비
	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	②
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b>.</b>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	8
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u>위촉하는</u> 민간	<u>성별을 고려하</u>
전문가 5인 이상	여 위촉하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
	3항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u>④</u> · <u>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 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 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구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 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 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워회의 설치) ① ----------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 •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원회(이하 "시·도분쟁조정위 원회"라 한다)를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다만, 시· 도 및 시・군・구에 시・도분쟁 조정위원회 및 시・군・구분쟁 조정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 원회가 시・도분쟁조정위원회 및

개

정

아

-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 1. ~ 8. (생략)
-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u>대통령령</u> 또는 시·군·구의 <u>조례(지방분쟁</u> 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 제72조(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 제 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조정한다. <후단 신 설>

시・군・구문쟁조정위원회의 기
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공동주
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 · 군
·구의 경우에는 시·군·구분
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u>있다.</u>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u>시·도</u>
<u>조례</u>
72조 <u>(시·도 및 시·군·구 분</u>
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시·도분쟁조정위원회
<u>이 경우 제</u>
1호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군・구
를 관할하는 시·도가 다른 경
우에는 해당 시·도가 협의하여

- 1. (생략)
- 2. 시·군·구에 <u>지방분쟁조정</u> <u>위원회</u>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 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 쟁
-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 여 <u>중앙분쟁조정위원회</u>에 조 정을 신청하는 분쟁
- 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안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한다.
-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② 시·도분쟁조정위원회----

정하는 시・도(분쟁이 발생한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
로 한정한다)가 심의・조정한
<u>다.</u>
1. (현행과 같음)
2 <u>시·군·구분</u>
<u> 쟁조정위원회</u>
3
<u>시·도분쟁조정위원회</u>
4 시·도분쟁조정위원
<u> </u>
② <u>시·군·구분쟁조정위원회</u> -
<u>A</u> ]
·도분쟁조정위원회
제73조 <u>(시·도분쟁조정위원회의</u>
<u>구성 등)</u> ① <u>시·도분쟁조정위</u>
<u>원회</u>

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국토교통부장관이</u>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2. (생략)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공인회계사·세무사·<u>건축사</u>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
  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u>10년</u> 이상 근무한 사람
- 6. (생략)
- ③ <u>중앙분쟁조정위원회</u>의 위원 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 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 40조제5항, 제8항, 제9항을 각각 준용한다. <u><후단 신설></u>

시 · 도지사가
선별을 고려하여
1. • 2. (현행과 같음)
3
<u>5년</u>
4 <u>건축사</u>
<u>·기술사</u>
5년
5
5년
<u>o c</u>
6. (현행과 같음)
③ <u>시·도분쟁조정위원회</u>
<u>이 경우 "국토교통부</u>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장의 직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 대행은 제40조제10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 10항 중 "분과위원장"은 "위원" 으로 본다.
- ⑤ <u>중앙분쟁조정위원회</u>의 위원 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는 제41조를 준용한다.
- ⑥ <u>중앙분쟁조정위원회</u>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저 등)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 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

<u>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u>
④ <u>시·도분쟁조정위원회</u>
,
⑤ 시・도분쟁조정위원회
⑥ <u>시·도분쟁조정위원회</u>
⑦ <u>시·도분쟁조정위원회</u>
⑧ <u>시·도분쟁조정위원회</u>
<u>\]</u>
•도의 조례로
세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u>시 · 도분쟁조정위원회</u>

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 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 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 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 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 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 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도분쟁조정위원회--- 

 ---- 시·도분쟁조정위원회---- 

 -도분쟁조정위원회---- 

 --- 시·도분쟁조정위원회--- 

③ 시·도분쟁조정위원회는 제 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시 ·도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분쟁조정위원회는 제 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 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

-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 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 양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 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 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 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 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 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 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 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조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

<u>로 통지하여야 한다.</u>
⑤
시·도분
쟁조정위원회
<u>⑥</u>
<u>\lambda</u>
•도분쟁조정위원회
·
<u>⑦</u> <u>제6항</u>
<u>8</u>

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 8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상대방 통지 의무, 통지를 받은 상대방의 답 변서 제출 의무는 제46조제1항,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 정에 응하여야 한다.
- 제76조(사실 조사·검사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 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

<u>시·도의 조례로</u>
⑨ 시·도분쟁조정위원회
<u>시·도의 조례</u>
로 정하는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u>시·도분쟁조정위원회</u>
② <u>시·도분쟁조정위원회</u>
제76조(사실 조사·검사 등) ①
시·도분쟁조정위원회는
<u>시·도</u>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시·도분
<u> 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u>

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

#### ② (생략)

-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 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 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 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 야 한다.
  - ③ <u>중앙분쟁조정위원회</u>의 분쟁의 당사자에 대한 조정의 절차중 합의 권고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지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멸

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민사 조정법」의 준용이나 서류송달, 절차,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 지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50 조를 준용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u>중앙분쟁조정</u> <u>위원회</u>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u> 예산의 범위에서 <u>중앙분쟁조정위원회</u>의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수탁 기관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수 있다.
-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u>.</u>
제	79조 <u>(시</u> ·도분쟁조정위원회의
	<u>-</u>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시·도지사는 시·도분쟁조정
	위원회의
	<u> 기</u> <u>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u>
	갖춘
	<del>^ .</del> ② 시·도분쟁조
	정위원회
	<u>성기전의</u>
	<u>시·도의 조례로</u>
	③ <u>시·도지사는</u>
	<u>시·도분쟁조정위원회</u>
제	80조 <u>(시·군·구분쟁조정위원</u>
	회) ① 시・군・구분쟁조정위원
	<u> </u>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 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분쟁당사자가 <u>지방분쟁조정</u>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 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 (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 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회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해당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 2. (생략)
  - 3.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 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 원 또는 <u>중앙분쟁조정위원회</u> 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 이 아닌 자

<u>시·도분쟁조정</u>
<u>위원회</u>
② <u>시·군·구분</u>
쟁조정위원회
③ 시・군・구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분쟁조정위원
회 회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1.・2. (현행과 같음)
3
<u>시·도분쟁조정위원회</u>
<u>사람</u>
<u> </u>

- - 1. ~ 1의4. (생략)
  - 2. 제50조제2항 및 제7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3. ~ 8. (생략)

제102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6의7. (생략)
- 17.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8. ~ 27. (생략)
- ④ (생 략)

100-(2 1)
1. ~ 1의4.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2. <u>제50조제2항(제78조에서 준</u>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u>사람</u>
3. ~ 8. (현행과 같음)
세10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16의7. (현행과 같음)
17
가 ㄷㅂ케ㄱᅱ이이ᅱ
<u>시·도분쟁조정위원회</u>
18. ~ 2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
원회) ① <u>공인중개사의</u> 업무에	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인중개사의
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에</u> 공인	<u>필요한 경우</u>
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u>둘 수</u>	<u>구성·</u>
<u>있다</u> .	<u>운영할 수 있다</u>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
	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
	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
	회를 해산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2
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	
학기술위원회 및 <u>「과학기술기</u>	<u>「국가과학기</u>
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
<u>과학기술심의회</u> 의 심의를 거쳐	학기술자문회의
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제6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①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과학기술의
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u>국토</u>	필요
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	<u>한 경우</u>
기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를 <u>둔다</u> .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 <u>수 있다.</u>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① 국토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①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u>	국토교통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	부장관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292호 기업도시개발 특	법률 제20292호 기업도시개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	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3(통합심의) ① 위원회는	제12조의3(통합심의) ①
실시계획 및 통합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	
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건	<ol> <li>「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li> </ol>
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조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	<u>1.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u>
치된 건축위원회	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건축위
	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u>기업</u>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u>국토</u>
<u>도시</u>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교통부장관은 기업도시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	
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	

시"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 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에</u> 도시개발위원회를 둔다.

- ② · ③ (생 략)
-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민간위원: 기업도시, 혁신도 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 2. (생 략) ⑤ ~ ⑨ (생 략) <u><신 설></u>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
<u>할 수 있다</u> .
②・③ (현행과 같음)
<b>4</b>
1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u>수 있다.</u>

법률 제20292호 기업도시개발 특 법률 제20292호 기업도시개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 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지

- ① · ② (생 략)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실무위원 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 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으로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이 추천하는 사람
  - 가. <u>「건축법」 제71조제4항</u> 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나. ~ 아. (생 략)
- 4. (생략)
- ④ (생 략)

급은 제20232오 기급고기계를 득
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u>
1. • 2. (현행과 같음)
3
가. <u>「건축법」 제3조의2</u>
나. ~ 아.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혅 개 정 안 했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 립) ① ~ ③ (생 략) 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 ④ -----을 수립하거나 변경(제5항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 「건축법」 제3조의2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따른 중앙건축위원회-----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심의위원회) ① 건축물에너지평 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 <u>필요한 경</u>우 --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 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 원회를 둘 수 있다. -----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평 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해산할

### <u>수 있다.</u>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
치 등)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	치 등) ①
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u> 소속으	국토교통부장관 -
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	
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u>국무총리가</u> 되고,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	
다.	<b>.</b>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	1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u>장</u>	<u>차관</u>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민간위원: 도시재생에 관한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 중</u>	<u>사람 중</u>
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
	여 위촉하는 사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8조(통합심의) ① ~ ③ (생	제48조(통합심의)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특별위원회가 검토 및 심의	4
를 거친 사항(중복지정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 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 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 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

 축위원회

2. ~ 8. (생 략)

 <b>-</b> .		

- 1. 「건축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지방건축위원회
  - 2. ~ 8. (현행과 같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
합심의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합심의위원회) ①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u>위하여</u> 공공지원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	
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u> 둔다</u> .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	③
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	
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	
다.	<b>.</b>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2
• 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u>위촉하는</u> 사람	<u>성별을 고려하</u>
	<u>여 위촉하는</u>

- 3. ~ 10. (생략)
- 11. 「건축법」에 따른 <u>건축위</u> 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 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⑤ (생 략) <신 설>

<신 설>

### ⑥·⑦ (생 략)

-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1. ~ 8. (생략)
- 9. 「건축법」에 따른 <u>건축위원</u> <u>회</u>. 다만, 제33조에 따라 촉진 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 10. (현행과 같음)
11 중앙건
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심의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심
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u>⑧</u> ・ <u>⑨</u>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u> </u>
1. ~ 8. (현행과 같음)
9 중앙건축
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	제6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
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부동산	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
<u>서비스산업에</u> 대한 중요한 정책	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의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기	<u>에</u>
위하여 <u>국토교통부에</u> 부동산서	<u>필요한 경우</u>
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u>둔다</u> .	<u>구성·운영</u>
	<u>할 수 있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	3
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2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u>위촉하는</u> 사	<u>성별을 고려하</u>
라	여 위촉하는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위워회를 해산할

### <u>수 있다.</u>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u>국</u>
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
심의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에</u>	<u>에</u>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	
의회"라 한다)를 <u>둔다</u> .	<u>구성·운영</u>
	<u>할 수 있다</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u>수 있다.</u>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제21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u> 에 따른 명단 공표 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u>	<u>필요한 경</u>
<u>부에</u>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u> 수</u>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	
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
	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를 해산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 -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반시설관	국토교통부장관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u>국무총리가</u> 되고,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	
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	1
는 중앙행정기관의 <u>장</u>	<u>차관 또는</u>
	차관급 공무원
2. 민간위원: 기반시설의 유지관	2
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u>위촉하는</u> 사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
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국</u>	사업 필
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	<u> 요한 경우</u>
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	
원회"라 한다)를 <u>둔다</u> .	<u>구성·운영할</u>
	<u>수 있다</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u>임명 또</u>	<u>성별을</u>
<u>는 위촉</u> 한다.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	6
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u> 제9항에 따라 중
	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
	되는 것으로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위원
	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 를 해산할 수 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 구등</u>
<u>국토교통부에</u> 토지이용규제심	필요한 경우
의위원회를 <u>둔다</u> .	<u>구성·운영할 수 있</u>
	<u>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u>수 있다.</u>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	2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역 ㆍ지구등	
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u>단서 신설></u>

----- <u>성별을 고려하여 위</u> <u>촉하는</u> -----

4 -----

----. <u>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u> <u>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u>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u>해외건설진</u>	필요한 경우
흥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구성ㆍ
<u>다</u> .	<u>운영할 수 있다</u>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외건설진흥위원회를 해산할 수
	<u>있다.</u>